

# ESG위원회 규정

[시행 2022. 01. 25] [dbcon.co.kr-2022-3251, 2022. 01. 25, 제정]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동부건설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정관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ESG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구성, 운영, 권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장 구성

### 제2조 (구성 및 선임)

-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.
- ②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.

### 제3조 (위원장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추천하며,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선임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제4조 (위원의 임기)

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이사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까지로 한다.

## 제3장 회의

### 제5조 (위원회)

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# 제6조 (위원회의 소집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, 늦어도 회일 24시간 전까지 이를 각 위원에게 문서, 전자문서, 구두, 기타 발송 및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### 제7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, 모든 위원이 음성이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하고,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## 제4장 권한 및 의무

### 제8조 (부의사항)

-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- 가.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결의  
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해 사전 심의·결의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  
다만, 법령이나 정관상 위원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 후 그 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한다.

- (1) 회사의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
  - (2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양수
  - (3) 자기주식의 취득, 처분
  - (4) 중장기 경쟁력 제고 방안
  - (5) 기타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경영사항
- 나.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 건의  
위원회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이사회에 정책 반응을 건의할 수 있다.
- 다.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사항 심의  
• CSR(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) 전략, 계획, 활동성과 보고
- 라.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평가결과 심의  
• 위원회는 효율적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및 각 위원회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### 제9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,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 제5장 기타사항

### 제10조 (기타 요구 등)

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, 필요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.

### 제11조 (통지의무)

- ①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사 및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는 위원회의 결의사항의 재결의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 단,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사가 그 통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위원회 결의사항의 재결의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사는 위원회 결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 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.

### 제12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고, 이사회 의장이 정하는 자가 이에 임한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처리한다.

### 제13조 (경비)

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.

### 제14조 (규정의 개폐)

- ①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-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, 이사회 규정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---

<부 칙>

**1. 시행일**

이 규정은 2022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